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0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,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,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,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

- 소재지 :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(대방동) 등
- 운영시설 :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
 - ▶ 서울여성플라자 : 지상 5층, 지하 3층(연면적 22,520 m^2)
 - ▶ 서울가족플라자 : 지상 2층, 지하 2층(연면적 14,710 m^2)



서울여성플라자



서울가족플라자

○ 근거법령

- 법 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 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기금 및 출연금 등) 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나. 주요사업

-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
-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
-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
-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·보급
-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
- 국내외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·교류 및 민간 협력
-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의 운영·관리 등

다. '26년 소요예산(안) : 19,754,834천원

라. '26년 예산 산출근거(안)

- 사 업 비 : 7,493,306천원
- 일반관리비(인건비, 운영비 등) : 12,261,528천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,
-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, 서울여성의 경력 활성화, 아동의 권리 보장,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2조의3(출자·출연의 동의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광훈 (☎2133-5010)